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62호

**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
[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] 경미한 변경 고시**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247호(2016.8.11.)로 결정된 「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[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]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·고시합니다.

2022년 6월 16일
서울특별시

1. 고 시 명 : 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[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] 경미한 변경 고시

2. 변경내용

기 정	변 경(안)
제5장 도시환경정비 부문별 계획 제4절 건폐율 및 높이계획 4.1 건폐율 계획 따라서 높이 강화에 따른 불리한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도심부의 기존 도시조직과 가로 연속성 유지를 위해 건폐율을 80%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. 다만, 건폐율 완화 범위는 저층부(5층이하, 20m이하) 에 한하여 적용하고, 고층부의 경우는 도시계획조례상의 건폐율 이내로 적용한다	제5장 도시환경정비 부문별 계획 제4절 건폐율 및 높이계획 4.1 건폐율 계획 따라서 높이 강화에 따른 불리한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도심부의 기존 도시조직과 가로 연속성 유지를 위해 건폐율을 80%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. 다만, 건폐율 완화 범위는 저층부에 한하여 적용하고, 고층부의 경우는 도시계획조례상의 건폐율 이내로 적용한다. 여기서 저층부는 5층이하, 20m이하로 하되, 공연장 등 높이확보가 필요한 특수건축물의 경우는 20m 초과하여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저층부 인정이 가능하다.(이 경우에도 20m 초과부분은 건폐율 70%를 넘지 않도록 한다)

3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(☎2133-4635)

○ 서울시 홈페이지 > 서울소식 > 공고 > 고시·공고

※ 인터넷 주소 : http://www.seoul.go.kr/news/news_notice.do#list/1